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규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96 발의연월일: 2020. 8. 14.

발 의 자: 안규백·양정숙·전혜숙

최기상 · 김승원 · 김민철

김민석 • 민홍철 • 이상직

박용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 감면,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러나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(2019. 8. 2 7.)에 따라 도입된 신규제도인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경우,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, 혁신지구재생사업과는 달리 조세 및부담금의 감면,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있음.

이에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경우에도 조세 및 부담금 감면,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동 사업을 활성화하고 성 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의2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국유재산·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, 공동이용 시설 사용료의 감면,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, 건축규제의 완화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0조, 제30조의2, 제31조 및 제32조 를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의 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행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6조의2(도시재생 인정사업) ① | 제26조의2(도시재생 인정사업) ① |
| • ② (생 략) | •② (현행과 같음) |
| <u> <신 설></u> | ③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국유 |
| | 재산·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, |
| |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, |
| |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, 건축규 |
| | 제의 완화 등의 특례에 관한 |
| | 사항에 대해서는 제30조, 제30 |
| | 조의2, 제31조 및 제32조를 준 |
| | 용한다. |
| ③ (생 략) | 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 |